

	한국사	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⑪ 고려-6 고려의 사회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#신분제 : 양천제

법) 양인 - 천인으로 구분

양인 : 납세, 군역의 의무, 관직진출 가능

양인은 국가 직역을 맡은 정호와
직역이 없는 백정 으로 구분.

천인 : 납세, 군역의 의무 X, 관직진출 불가 - 대부분 노비 奴婢

● 지배층

문벌 : 왕실이나 다른 문벌가문과 혼인하여 권력 독점, 과거, 음서로 진출
직역의 대가로 받은 전시과의 토지, 녹봉, 재산으로 화려한 삶

하위 지배층 - 향리, 직업군인, 서리
보통 직역을 세습

향리 : 지방의 토착세력,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의 실질적 운영 담당
서로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 - 기득권 유지
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

● 백정

- 양인 중 피지배층은 대부분 농민.
- 국가의 직역이 없는 신분층을 백정이라고 부름.
-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, 공납, 역을 부담.
- 법적으로 과거응시 OK, but 현실상 어려운 일.
- 군공을 세워 정호가 되기도 함

● 특수행정구역(향,부곡,소)의 주민

: 법적으로는 양인 / but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대우
교육, 과거응시, 거주이전의 제한, 많은세금

● 천인 - 노비

- 재산으로 간주 / 매매, 증여, 상속 가능
- 일천즉천 - 부모중 한명이 노비면 자녀도 노비

국가에 속함 : 공노비 / 개인에 속함 : 사노비
사노비 中
주인집에 거주 : 술거노비 / 따로 거주 : 외거노비

● 직역의 대가 - 전시과

-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, 수조권을 지급한 것
- 경종 - 시정 전시과 - 관품(현직+전직) + 인품
- 목종 - 개정 전시과 - 관품(현직+전직)
- 문종 - 경정 전시과 - 관품(only 현직)

● 본관제

가문의 근거지인 본관을 중시 / 기원 : 왕건의 사성정책
지역은 주현>속현>특수행정구역 과 같이 등급이 정해져있었음.
고려는 본관제로 위계질서를 세우고, 향촌사회를 통제
본관을 떠나 이주하는것은 법적으로 금지
예외) 관리가 되어 이주 or 범죄를 저지르면 귀향형

cf. 속현

주현 : 지방관 파견 O

속현 : 지방관 파견 X

	한국사	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⑪ 고려-6 고려의 사회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●고려사회 : 부계=모계

- 일부일처제가 일반적
- 혼인 후에는 일반적으로 처가에서 살아 여성중심으로 가족구성
- 호적에는 남녀구분 X / 여성이 호주인 경우도 有
- 균분상속 / 윤회봉사
- 이혼, 재혼 ok
- 부계=모계
-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외손자가 대를 잇기도 함
- 친조부모=외조부모
- 음서 - 친손자=외손자